第289回國會
(臨時會)

國會運營委員會會議錄

第 3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10年4月27日(火)

場 所 國會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 독도영토수호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국제경기대회개최 및 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4. 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7.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8. 국회사무처직제 일부개정규칙안
9. 국회도서관직제 일부개정규칙안
10. 국회예산정책처직제 일부개정규칙안
11. 국회입법조사처직제 일부개정규칙안
12. 國家保衛立法會議法附則第4項의規定에의한解職公務員의補償에관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
13.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4.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

審査된案件

1.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 ····· 2
2. 독도영토수호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 ····· 2
3. 국제경기대회개최 및 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회안) ····· 2
4. 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회안) ····· 2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3
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3
7.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3
8. 국회사무처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의장 제의) ····· 3
9. 국회도서관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의장 제의) ····· 3
10. 국회예산정책처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의장 제의) ····· 3
11. 국회입법조사처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의장 제의) ····· 3
12. 國家保衛立法會議法附則第4項의規定에의한解職公務員의補償에관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현경병 의원 대표발의)(현경병·이사철·정해걸·안홍준·이화수·송훈석·공성진·정갑윤·권택기·김용태·진수희·김무성·유재중 의원 발의) ····· 7
13.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장 제의) ····· 7
14.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김성조·박보환·배은희·신상진·여상규·황진하·김광림·백성운·원유철·강성천·박대해·

최인기・차명진・정갑윤・이상득 의원 발의) ····· 7

(10시26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정훈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제289회국회(임시회)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
2. **독도영토수호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
3. **국제경기대회개최 및 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회안)
4. **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회안)

○위원장대리 김정훈 의사일정 제1항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독도영토수호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국제경기대회개최 및 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서면동의자를 대표하여 우윤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근 위원 우윤근 위원입니다.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독도영토수호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국제경기대회개최 및 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조국을 지키다 산화한 천안함 승조원들과 한주호 준위, 그리고 금양호 선원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 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 백령도 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이던 천안함이 침몰되는 중대한 국가안보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발생 이후 현재까지 실종자 구조 및 수색작업에 이어 침몰된 선체를 인양하고, 민・군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사고원인을 밝히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고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우리 군의 위기대처능력 및 국가안보태세와 관련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 특히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고원인의 규명과 효과적인 재발방지 대책의 마련이 촉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하여 사고원인을 명백히 규명하고 우리 군의 위기대응능력과 국가안보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국회 내에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동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총 20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0년 4월 28일부터 2010년 6월 27일까지로 하되,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의해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독도영토수호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을 침탈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해 왔으며, 최근에는 독도를 일본국 영토로 기술한 소학교 사회교과서를 검정・승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다시 주장하는 등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하여 범정부 대책을 논의하고 국제법적 대응책 등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독도 영토 수호 대책을 마련하고자,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국회 내에 '독도영토수호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동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총 18인으로 하고, 활동기한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제경기대회개최 및 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2011년에 대구에서 개최되는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국제경기대회의 개최 및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안 등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국제경기대회개최 및 유치지원특별위원회가 2010년 5월 29일까지 활동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관련 법률안 및 지원방안에 대하여 계속 논의・심사가 필요하여 그 활동기간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안 등을 심사・처

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가 2010년 5월 29일까지 활동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관련 법률안 및 지원방안에 대하여 계속 논의·심사가 필요하여 그 활동기간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 4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훈 우윤근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독도영토수호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국제경기대회개최 및 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활동기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활동기간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7.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8. **국회사무처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의장 제의)
9. **국회도서관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의장 제의)
10. **국회예산정책처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의장 제의)
11. **국회입법조사처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의장 제의)

(10시32분)

○위원장대리 김정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국회사무처직제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국회도서관직제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국회예산정책처직제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국회입법조사처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김재윤 위원님 나오셔서 7건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대리 김재윤 법안심사소위원회 김재윤 위원입니다.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배은희 위원, 손범규 위원, 우윤근 위원, 홍영표 위원, 이정희 위원, 김정훈 위원장님이 참석하여 3월 24일, 4월 19일 및 26일 등 세 차례에 걸쳐서 국회법,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인사청문회법 등 국회관계법 159건과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 소속 4개 기관의 직제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법률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국회법,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인사청문회법은 각각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내용입니다.

첫째, 특임장관실의 직무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특임장관실의 소관을 대통령의 소속기관을 소관으로 하고 있는 국회운영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이 개정되어 정부는 2009회계연도 결산부터 세입세출과 기금을 통합한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므로 국회가 통합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국회는 정부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결산을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국회법 규정 제128조의2 제1항은 국가재정법에서 정부가 결산을 매년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 제61조와 중복되므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상임위원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 대상인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인사청문 요청에 있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해당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국회의 선례로서 확립된 1일 1차 회의의 원칙에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명문화하면서도 중대한 국가적인 의사결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산회한 경우라도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때에는 회의를 재개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개정에 맞추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회부 등에 관하여 예산안의 회부 및 심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국회는 한도액안에 대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확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여섯째, 표결 과정 중 특별한 사정 등에 의하여 표결 결과의 신뢰성에 대하여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표결 전에 정당한 투표권자인지 여부를 전자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시행일은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2011년 1월 1일로 규정하였습니다.

일곱째, 현재 기명·무기명 투표는 수기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어서 투표 결과를 집계하는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으므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기명·무기명 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윤리심사와 징계를 징계제도로 일원화하였습니다.

먼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현재 국회규칙인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서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구성된 사례가 없으므로 설치·운영을 강제하기 위하여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자문위원을 여당과 야당이 동수로 추천하여 구성하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존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자문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리심사제도와 징계제도는 현실적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할 실익이 크지 아니하므로 일원화하고, 현재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1회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는 위반사실을 통고하는 경미한 조치로만 이루어지고 있던 것을 의원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반 즉시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사유로서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수의견으로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위원 구성에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교섭단체 구성요건이 완화되어야 하며 윤리심사와 징계제도의 일원화와 관련하여서는 국회의 대립이 정치적인 사안으로서 이를 해결하는 방안이 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안은 국회가 국정감사 등을 실시할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의 출석·해명 요구 또는 관계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가기관이 법률상 근거 없이 사실상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인사청문회법에 국가기관이 공직후보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국회법에서 상임위원회 구성 전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인사청문회법에서도 관련 조문을 맞추어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직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안은 비서관 299인 증원을 포함하여 4개 소속기관의 정원을 403인 증원하는 것이나 수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서 33인을 감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사무처의 직제의 경우,

첫째, 제18대 국회에서 의안과 법률안 입안 의뢰 건수가 급증하는 데 대처하기 위하여 원안에

서 위원회와 법제실의 정원을 각각 17인과 10인을 증원하고 있으나 7인과 4인을 삭감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증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경호 및 방호체계를 개편하기 위하여 경호기획관·의회방호과장을 각각 신설하고 경위와 방호원을 25인 증원하는 원안에서 의회방호과장 1인 신설과 X-ray 검색대 및 금속탐지기를 담당하는 여성 방호원 5인 증원 등 6인 증원과 방호과장 아래에 담당계장 2인을 두기 위하여 6급 경위의 직급을 5급으로 상향하는 것만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경호업무는 의사국장 아래에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경호기획관으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이 있다고 고려되나 후반기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소위원회 회의 시간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속기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6인 증원하려는 원안 중 과장 1인을 증원하는 것은 현행 2명의 과장으로 충분히 통솔이 가능하다고 보아서 반영하지 아니하고 담당계장 2인과 실무 속기사 3인만 증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회도서관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은 법률도서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정보심의관, 법률정보개발과 등을 신설하고 국회기록물관리 강화를 위하여 전문요원 3인을 증원하는 등 총 20인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현재 법률정보서비스 구축 방향 등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못하여 법률정보심의관은 삭제하고, 법률정보개발과는 일부 인원을 감원하였으며, 기록물 관리전문요원의 경우 국회기록물관리규칙 개정안이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개정안의 20인 중 9인을 감축하여 11인으로 하였습니다.

한편 2009년 4월 국회도서관직제 개정 당시 감축된 9급 상당 일반계약직 12인의 경우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2010년 4월 26일에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지만 감원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고려하여 일반계약직 12인을 증원하여 국회도서관은 총 23인을 증원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은 조세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세분석심의관을 신설하고 세제분석팀과 세수추계팀에 분석관을 증원하고 공공기관의 예산·인력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평가팀을 신설하는 등 12인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조세 분석 인력은 원안으로 하되 공공기관평가팀은 신설되는 팀으로서 향후 평가 대상, 평가 계획을 구체화하면서 점진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1인을 감원하여 총 11인을 증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은 입법조사 요구 및 현안보고서 발간 건수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하여 입법조사관 9인 및 행정지원 인력을 2인 증원하여 총 11인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상대적 우선순위가 낮은 행정안전팀 조사관 1인과 입법조사 업무가 아닌 행정지원 인력 1인을 감축하여 9인을 증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 등을 철저히 심사하였습니다만 심사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국회사무처직제 일부개

정규칙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국회도서관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국회예산정책처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국회입법조사처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심사소위 위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규칙안 의결과 관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박계동 국회사무총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총장 박계동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국회사무처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회사무처는 오늘 의결해 주신 직제개정안에 따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입법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훈 다음은 허영호 국회도서관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직무대리 허영호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입니다.

먼저 국회도서관직제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국회도서관은 이번 직제 개정을 계기로 법률도서관 서비스를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야간 개관 및 휴일 개관에 필요한 업무인력을 활용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국회의 이미지 제고에도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해룡 국회예산정책처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정책처장 신해룡 국회예산정책처장 신해룡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국회예산처의 조세 분야 및 공공기관 평가와 관련된 인력보강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오늘 직제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확신컨대 국민과 납세자의 편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재정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국회예산정책처의 직제 개편에 큰 도움을 주신 국회운영위원님들의 위대한 결단을 역사는 오래도록 기억할 것입니다.

이번 조직보강으로 한 단계 높은 세입세제 분석과 세수추계 및 공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의 초석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최고의 성과로 보답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처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한결같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훈 수고했습니다.

우리 신해룡 처장님의 진심 어린 진실이 담긴 얘기가 참 돋보입니다.

다음은 심지연 국회입법조사처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조사처장 심지연 국회입법조사처장 심지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국회입법조사처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직제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저희 입법조사처가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정책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그리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사무총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12. 國家保衛立法會議法附則第4項의規定에의한 解職公務員의補償에관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현경병 의원 대표발의)(현경병·이사철·정해걸·안홍준·이화수·송훈석·공성진·정갑윤·권택기·김용태·진수희·김무성·유재중 의원 발의)

13.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장제의)

(10시48분)

○위원장대리 김정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국가보위입법회의법부칙제4항의규정에의한해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2항 국가보위입법회의법부칙제4항의규정에의한해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 안건은 국가보위입법회의법에 따라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보상하는 특별조치법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해직공무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아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어 관계사무가 종료된 지 19년 이상 경과되었기 때문에 이 법률을 폐지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대체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국가보위입법회의법부칙제4항의규정에의한해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을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된 취지에 따라 그 관련 내용을 하위법령인 국회규칙에 반영하는 것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전체회의에서 바로 논의하는 것보다는 법안소위에 회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꼼꼼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이 규칙안을 바로 법안소위로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도서관장직무대리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을 처리할 순서인데 이법 처리하기 전에 장내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을 하겠습니다.

---

14.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김성조·박보환·배은희·신상진·여상규·황진하·김광림·백성운·원유철·강성천·박대해·최인기·차명진·정갑윤·이상득 의원 발의)

(10시52분)

○위원장대리 김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으로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 안건은 제정법률안으로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단서 규정에 의거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기 때문

에…… 이의 있으신 분들 누가……

우윤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윤근 위원 이 법안에 대해서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점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 건 법률안 8조(집회 및 시위의 제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8조1항 또 2항 경호안전구역에서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조항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이것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발생이 없는데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또 하나는 입법취지는 좋지만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입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입니다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예상해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고 그 정도가 과잉금지다, 또 하나는 이런 입법례를 쉽게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회담을 한다고 해서 테러 발생 가능성이 많은 유럽의 여러 나라 어떤 나라들도 정상회담 개최를 이유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한 예가 거의 없다라는 점을 봤을 때 이 법은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 기본권을 위배하고 있다, 위헌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유로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우제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제창 위원 처장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것과 관련해서 운영위에서 상당히 아주 제너러스(generous)하게 예산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받았습니까, 이 예산?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그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총예산 125억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집행 및 안전 활동의 준비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우제창 위원 그것도 사실은 기존에 있는 경호기구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배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을…… 세상에 저한테…… 아니, 이런 경우는 없다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외국에.

들어 보십시오. 들어 보십시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보다 더 큰 APEC도 이런 법 만들지 않고 치렀어요. 세상에 G20가 뭔데 이런 법까지 만들어 가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제가 봐서는 정말 뭐라 그럴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률 자문을 구했더니 본 건 법률안 제8조는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는 획일적인 금지 규정으로서 방법의 적절성과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이런 해석을 봤어요 제가.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난리 법석을 피워 가지고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다만 며칠이라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정도 예산 받았으면 됐지. 나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들 수준을 우롱하는 이런 법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선진국 어느 예가, 세상에 우리보다 훨씬 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나라들도 이것을 안 하고 있는데…… 세상에 우리가 태국도 아니고 동남아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이런 법을 만들어서 대처하려고 하세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위원님 하시고……

○이정희 위원 경호처 차장님이시지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예.

○이정희 위원 경호처 차장님께는 제가 조금 이따 묻고, 운영위 전문위원께서 좀 나오셔서 답변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대리 김정훈 이정희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김재윤 위원님이 지금 11시에 법사위에 올라가셔야 된다고, 질의 순서를 조금 먼저 주시면……

예, 감사합니다.

○김재윤 위원 먼저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은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호처 차장님, 지금 위헌 요소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 많이 들으셨지요? 특히 과잉금지 원칙을…… 명백하게 헌법에 위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은 굉장히 통과되고 나서도 위헌 시비가 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집회 및 시위는

물론 국민의 기본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금번 G20 행사라는 큰 행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국가안전보장 또는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그런 법적 규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이번 특별법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제출된 특별법이 굉장히 한시적인 그런 법률이고, 내용 자체도 사실 들여다 보면 최소한의 제한 사항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1인 시위라든가 또는 문화·종교 활동 등 정상적인 집회 및 시위는 다 허용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집회 기간도 저희 경호 안전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 5일 정도로 지금 제한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행사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변에 보면 도산공원이라든가 잠실운동장, 이런 특정한 지역을 저희들이 지정해 가지고 평화적인 시위·집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윤 위원 이미 다른 법률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G20에 참가하는 정상들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다시 모든 집회나 시위를 예외 없이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 금지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외국, 지금 말씀하신 영국이라든가—최근에 했던 국가들입니다—미국이라든가 덴마크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이루어졌던 다자간 정상회의 때 발생했던 시위 양상을 보면 각국에서 몰려든 원정 시위대의 폭력·과격·불법 시위로 인해서 행사 지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국에서 그런, 인권 선진국에서도 관련되어 있는 그런 법률을 개정하거나 보완을 해 가지고 행사장 주변에, 예를 들어서 집회나 시위를 완전히 원천 금지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런 불법적인 그리고 폭력적인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사실은 부득이하게 특별법에 그 내용을 집어넣게 된 것입니다.

○김재윤 위원 그런데 우리가 참여정부 때 APEC 정상회의도 성공리에 치러 냈고 경호처 차장님 입장에서 볼 때 대한민국의 경호 수준은 선진국 수준을 뛰어넘는 수준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권이 바뀌어서 갑자기 경호가 부실해지거나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집회라든가 그다음에 시위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될 무슨 상황 변경이 생긴 겁니까? 현 정권이 그렇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용상으로 엄격한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최소한의 제한사항……

○김재윤 위원 그러면 제한사항이 없으면 굳이 기존에 있는 법률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그런데 기존의 법률로는 현재 집회·시위를 갖다가, 불법적인 시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김재윤 위원 저는 왜냐하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오히려 우리나라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미 안전하고 충분히 우리의 경호시스템으로서도 G20 정상들을 충분히 경호할 수 있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데 또 이런 법을 만들면 '어, 뭔가 우리나라 정부가, 대한민국이 테러 위험지역인가 그래서 이런 특별법을 만드나?'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민주당의 입장은 이 법안이,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이 헌법에도 위배될 수 있고 또 우리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자유도 침해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이미 안전한 국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의 경호시스템으로서도 정상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 법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정희 위원님, 양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수석전문위원께, 잠시만 나오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배부된 자료에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에 대한 수정안이라는 것이 자료가 배부가 됐는데요. 이 수정안은 어디서 논의가 되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이것이 법안소위에 회부된 적도 없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한 번도 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것을 본 적이 없는데요.

○수석전문위원 김성곤 법안소위에 회부될 수 없었던 이유가……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수정안이 어느 분과 어느 분의 협의 또는 어떤 기구의 협의에 따라서, 의논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인지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성곤 위원회에서 수정안은 위원 한 분의 동의로 제출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 위원이 계실 때는 바로 위원회의 의제가 됩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데 이 발의자가 나누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의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느 의원께서 제안하셨는지도 안 나와 있고 공란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성곤 제가 지금 알기로는 강석호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고 김동성·박보환 의원님이 찬성을 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혹시 여야 간에 이 수정안에 대해서 합의가 된 일이 있는 것입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성곤 수정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성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경호처 차장님께 여쭤야 되겠는데요. 운영위 회의가 열리기 30분 전에 저희 의원실로 경호처에서 법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에 의하면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안' 이렇게 되어서 제목 바로 아래에 '여야 수석회의 수정안' 이렇게 해서 써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 이것 사실과 다르게 써 가지고 오신 거네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반대를 하고 계시고 수석전문위원께서도 확인해 주신 바에 따르면 민주당 위원님께서 이 수정안에 합의해 주신 게 없는데 왜 여야 수석회의 수정안이라고 써 가지고 오신 거지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

○이정희 위원 답변을 좀 해 보십시오.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저희들이 양당 쪽에 저희들 안을 제출했는데 최종적으로 협의된 사실은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최종적으로 협의된 사항은 확인을 안 하셨다고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예.

○이정희 위원 확인을 안 하고 대통령실에서 의원실에 보내는 문서에 여야 수석회의 수정안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써서 보내도 됩니까? 이래도 돼요? 경호처는 이렇게 일을 하세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그 사항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경호처에서 보낸 자료를 보니까 '군을 배치하겠다' 이렇게 써서 보내셨더라고요.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이렇게 해서 2010년 4월 15일자로 의원실에 보내신 것을 보니까, 지금 법안에 보니까 4조에 '통제단장은 경호안전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호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지원 및 인력동원에 관해서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군이 포함되는 겁니까?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일부 지금 국가주요시설 또는……

○이정희 위원 아니, 군이 포함되느냐고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일부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포함된다?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예.

○이정희 위원 아니, 군을 동원해서 지금 G20 정상회의 회담을 치르려고 하시는 거예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그것은 일부 저희들이……

○이정희 위원 이것 계엄하에서 치르는 것하고 국민들에게, 뭐가 다릅니까?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경찰이 예를 들어서 안전 활동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대국민 접촉 사항이 없다거나 이런 비노출 지역에 저희들이 일부 군을 배치를 해서……

○이정희 위원 군은 계엄 상황이 아니면 경찰업무에 종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헌법에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법률로 해 가지고 지금 '여야 수석회의 수정안'이라고 하면서 위원들에게 허위로 보고를 하고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세계 20개국 정상들이 모이는 회의를 지금 나라 망신을 시키면서 국민들에게 계엄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게 하면서 치르시겠다는 거예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그것은 계엄 상황

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이정희 위원 군은 계엄 아니면 경찰 업무에 종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 시행일은 언제부터입니까?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9월 1일부터입니다.

○이정희 위원 9월 1일부터지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예.

○이정희 위원 그런데 왜 오늘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이것 오늘 처리하겠다고 들고 오신 것 아니에요, 오늘 처리해 달라고? 의원실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예, 가능하면 그렇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이정희 위원 저희 6월 국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급하면 언제든지 국회 열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한 번도 우리가 심의를 해 본 적이 없고 그리고 법안소위에 간 적도 없고 집회와 시위에 관한 기본적인, 본질적인 기본권의 침해가 들어 있고 군을 동원하는 이런 것들을 국회운영위원회에 오늘 30분 전에 내놓고 허위로 수석회의 수정안이라고 보고를 하시면서 내놓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한 번 더 나와 보십시오.

제가 이 법안이 도대체 어느 정도 검토가 된 것인지 확인을 해 보려고 10시 5분에 운영위원회에 전화를 해서 '검토보고가 나와 있느냐?' 이렇게 여쭸습니다. 그랬더니 검토보고 작성된 게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제출문서에 검토보고서를 내셨네요. 이 검토보고서는 20분 안에 작성이 된 겁니까, 30분 안에 작성된 겁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성곤 그 답변은 어느 직원이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잠깐 보고가 잘못된 것으로…… 검토보고는 작성이 되어 있었지만……

○이정희 위원 검토보고서가 언제 작성된 겁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성곤 검토보고는 작성된 게, 제가 한 일주일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업무처리가 검토보고서가 작성이 되면 국회 홈페이지에 작성된 지 얼마 안에 인터넷상에 올라와야 됩니까, 파일이?

○수석전문위원 김성곤 국회법 기준은 상정되기 48시간 전에 배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10시 5분에 확인했어요. 그런데 검토보고서가 국회 홈페이지에 파일이 올라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회에 전화해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상하다, 어떻게 검토보고서도 안 나오고 법안을 상정하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성곤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까 보셨듯이 상정이 되는 순간에 준비를 하고 있다가 똑같이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것입니다.

○이정희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경호처가 여야수석회의에서 수정안을 합의했다고 해서 허위로 지금 보고를 한 것이고 더군다나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기본권의 제한을 훨씬 넘어서서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경호처 차장님, 지금 일반적인 집회와 시위는 정상적인 것은 허용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수정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런 규정도 없이 집회와 시위의 제한 8조, 경호안전구역 안에서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여 줄 것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끝. 무슨 제한이 있습니까? 집회와 시위 다 금지하겠다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경호안전구역 설정 기준도 집시법에 보면 200m 이내에서 금지되는, 200m 이내에서만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하지만 여기에 경호안전구역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호안전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누가 지정하느냐? 통제단장, 경호처장입니다. 혼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통제단장이 알아서 지정하고 그리고 알아서 결정하겠다는 거지요. 이게 법률의 체계상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답변을 좀 해 보십시오.

아니, 도대체 법률 자문을 받기나 한 겁니까? 대통령실이 법률을 이런 식으로 내요? 법률 자문 받으셨어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예, 법률적인 자

문을 받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자문을 받은 결과 큰 문제없이 반영이 가능하다 하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정희 위원 누가 법률 자문을 하셨어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자체적으로 법률, 법무관이 있기 때문에, 법무비서관이 있기 때문에……

○이정희 위원 지금 나오셨습니까? 출석을 하셨어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정희 위원 저는 이 법안은 우리 국회에, 제가 국회에 들어온 지 경험은 얼마 안 됐지만 경험한 적 없는, 사상 유례없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안소위로 회부해 주시고 거기에서 대통령실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 분이 출석하셔서 심도 깊게 논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훈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나라당 원내수석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안 법안에 대해서는 제가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G20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 확보가 제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G20 정상회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안전 관련 법안이 꼭 있어야 되겠다. 또 그리고 지금 외국의 테러 단체들로부터 그런 심각한 테러 위협의 어떤 첩보들이 들어오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필요한 법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이 법 자체가 지금 아주 한시법으로 돼 있습니다. 9월 초부터, 9월 1일부터 11월 그것 열리는 때까지 한 두달 남짓 한시법이고 또 야당에서 우려하시는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한다 하는데 이 법 조항을 보면 아주 이렇게 제한을 뒀습니다.

통제단장은 교통소통, 질서유지 등 원활한, 그러니까 교통소통이나 질서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게 돼 있고 거기다가 또 야당의 요구로 단서 조항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5조에 해당하는 그런 일반적인 집회에는 제한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또 단서 조항까지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야당은 꼭 이 법이 필요하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전에 부산에서 열렸던 APEC 행사하고는 회의 성격도 다를 뿐만 아니라 또 서울의 도심지에서 열리는 회의이기 때문에 경호안전상의 문제가 더 심각하게 제기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안소위에 회부를 안 한 것은 지난주에 전체 우리 운영위원회가 열렸을 때 상정을 해서 법안소위에 회부를 하려고 했지만 그때 여야 간사 합의로 법안소위에 회부를 하지 않고 오늘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바로 논의를 하자라고 여야 간사끼리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사 합의에 따라서 법안소위에 회부를 하지 않고 오늘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바로 상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고……

○이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훈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훈 이 안건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 표결로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훈 이 안건에 대해서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찬성하고자 하는 위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다음으로 이에 반대하는……

○이정희 위원 이게 말이 되냐고요!

○위원장대리 김정훈 위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이정희 위원 이게 정말 말이 돼요!

○위원장대리 김정훈 조용히 하세요.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어떻게 이렇게 해요!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고함을 질러야 국회의원이야?」 하는 위원 있음)

(「또 쇼를 하네」 하는 위원 있음)

○강석호 위원 보니까 한시법인데 그것을 가지고 죽일듯이 그래요.

○위원장대리 김정훈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라고 했잖아요.

○이정희 위원 국회의원이 법 하나 통과시키는 것 이렇게…… 절차 제대로 밟지도 않고 해도 됩니까?

(「회의 진행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지켜야지!」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정훈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4인 중 찬성 11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 이 안건에 대한 공청회 또는 청문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강석호 의원을 포함한 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원안과 수정안을 포함하여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석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 의원 강석호 의원입니다.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은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이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에는 뜻을 같이 하면서도 동 특별법안의 제정으로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각종 경호안전 및 테러예방활동이 과도하게 이루어져 의도하지 않게 국민의 기본권이 지나치게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인식하에 G20 정상회의와 관련한 활동에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 중 관련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률 제정의 목적을 경호안전으로 축소하고 테러예방활동을 법률 제정의 목적에서 삭제하기 위하여 법률 제명을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안'으로 수정하고 테러를 포함하고 있는 관련 조항에서 테러와 관련된 문구를 삭제·조정하고, 다음으로 경호안전구역 내에서의 집회 및 시위의 금지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첫째, 경호안전구역의 지정 시 목표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도록 하고,

둘째,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집회는 허용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며,

셋째, 집회 및 시위의 제한기간은 5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경호안전 활동이 꼭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될 수 있도록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 드린 수정안에 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이 법률안 및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훈 말씀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경호처 차장님, 법률 자문 내용 말씀해 보십시오. 뭐라고 받으셨습니까? 법제처 심의 거쳤습니까? 이게 정부 법률안이 아니지요. 보십시다.

김정훈 의원님 발의로 나오기는 했는데,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10년 4월 15일에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문서를 써 가지고 저희 위원실에 주셨어요.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법안 내용을 준비하신 것은 맞지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데 입법 절차상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니까 의원 입법으로 돌리신 것이지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G20 정상회의는 11월 달이지만 그 전에 재무장관회의라든가 회의가 6월 달부터 계속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저희들은 최초에 6월 1일자로 법안을 마련해서 G20 정상회의와 관련된 모든 행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법률안 시행 기간을

최대한 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9월 1일부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정희 위원 최초에는 G20 정상회의 말고 재무장관회의, CEPA회의 이런 데까지 다 적용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집회 및 시위 법률만 거기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G20에 관련되어 있는 전반적인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국가주요 시설물이라든가 공공시설물에 대한 테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결국은 마지막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정희 위원 군에 대해서는 헌법적 통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군, 군대의 임무가 뭡니까?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경호 활동 중에 저희들이 가지지 못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생방 관련되어 있는 작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군에서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면 그런 부분들은 지원 요청을 해서 완벽한 경호안전 활동을 위해서 협조를 받고 또 받으려고 하는 측면입니다.

○이정희 위원 군을 동원하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그렇습니다.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뭐가 최소화되어 있습니까? '경호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경호안전 업무의 지원 및 인력 동원에 관해서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끝' 이게 무슨 제한이 있는 것입니까?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경호안전 활동에 필요한 기관들은, 군은 거기 일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약청이라든가 소방방재청이라든가 다른 기관도……

○이정희 위원 이 수정안에 그것에 관한 무슨 제한 규정이 있냐고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그 내용 중에 저희들이……

○이정희 위원 법 한 번도 안 만들어 보셨어요? 이렇게 법을 만듭니까? '경호안전구역은 경호안전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최소한의 범위'라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그 범위는 아직 G20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호환경이라는 게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호환경을 고려해서 국민 불편 요소를 최소화시키고 저희들 경호안전 목적 달성하고,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시킵니다.

○이정희 위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집회와 시위에 관한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입니까, 아닙니까?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기본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기본권이지요? 그러면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제한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나 질서유지를 위해서나 공공복리를 위해서나 그 어떤 이유를 들더라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은 침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집시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1조에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 거리를 법에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남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놓으신 이 법에는, 이 수정안에는 도대체 거리표시가 뭐가 있습니까? "경호안전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여기에 어떤 숫자가 있습니까?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그 숫자를 오히려 거기에 사전에 명시해 놓으면 향후에 국민불편요소라든가 제약요소가 더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희 위원 제가 여쭤보니까 곡사화기 유효사거리 2km 제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현재 저희들 규정상에는……

○위원장대리 김정훈 질문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일반적인 규정이고……

○이정희 위원 무슨 규정이 있어요? 그런 규정

이 어디 있어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저희들 경호업무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것은 내부규정일 뿐이지요. 그것으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바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국민의 기본권을 행정기관 내부의 규칙 가지고 어떻게 바로 제한을 합니까?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예.

○이정희 위원 법률에 명시를 해야지요! 그럼 법에다가 아예 그렇게 써가지고 오시든가요, 2km.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정희 위원 지금 대포 쏘는 게 무섭다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누가 대포 들고 올까 봐, 시위대가 대포 들고 올까 봐 무섭습니까? 2km부터 막게!

○위원장대리 김정훈 이정희 위원님 이것 또 축조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 경호안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데 '통제단장이 기간 및 대상구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통제단장이 이렇게 공고하는 데는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어떤 심의절차를 거칩니까? 대통령령입니까? 아니면 규칙입니까? 통제단장이 경호차장이지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경호차장이 혼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대리 김정훈 마무리해 주시고요, 축조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답변을 해 보십시오. 하나도 제대로 답변을 하시는 게 없네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필요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특별법에 재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부분은 별도로 시행령을 만들든가 해서 저희들이……

○이정희 위원 시행령을 만들려고 하면 법에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만든다 이렇게……

○위원장대리 김정훈 자,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 명확하게 입법위임을 명시적으로 제한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법의 기본적인 원칙이지요. 그런데 나중에 필요하면 시행령을 만들어요? 법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 일이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정훈 그러면 축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충분한 의견……

○이정희 위원 이것은 법의 기본적인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훈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원안과 수정안을 포괄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남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훈 이 조항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할 테니까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겠어요? 지금 축조심사합니다.

○이정희 위원 이야기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훈 안 하시겠어요?

○이정희 위원 말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훈 5분간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축조심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지요? 1조, 2조, 3조, 4조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김정훈 일괄하여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이정희 위원 위원 여러분!

저는 아무리 필요한 법이라고 할지라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법입니다. 왜 4월 국회에서 이렇게 오늘 아침 30분 전에 받아온 수정안 가지고 여기에서 통과시켜야 합니까? 사실상 제정법이라는 것을, 정부가 내놓은 안이라는 것을 지금 경호처 차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공청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회가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보아 넘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보아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한나라당 당론이니까 통과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수 있습니까? 토론을 하십시다.

○위원장대리 김정훈 예?

○이정희 위원 토론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안소위로 넘기시지 못하겠다면 여기 계류해 두시고 축조심의를 다음 회의에,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이어가시는 것을 저는 제안드립니다. 저희가 심도 깊게 토론하는 것이 필요합

니다. 하나하나 불러다 놓고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어떤 법률자문을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물어봐야 합니다. 그것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토론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정훈 지금 하십시오. 지금 시간 드리니까 이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정희 위원 이 법은 첫 번째로 제가 경호처 차장님께 여쭤 보면서 확인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제정법인데도 불구하고 성격에 맞지 않게 공청회가 생략됐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헌법상 기본권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법률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법률로 제한할 경우에 최소한을 제한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제한해야 되고, 여기에 완전히 위배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경호안전구역은 얼마로 할 것이냐, 경호안전구역 지정은 어떤 절차를 거칠 것이냐, 다 대통령실 경호처장에게, 국회에서 잘 통제되지도 않는 경호처장에게, 완전히 개인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을 저희가 만들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제8조(집회 및 시위의 제한)에서 "원활한 경호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실상 이것은 모든 경우를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경호안전구역 안에서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경찰관서의 장이 이것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겠지요. 그러면 집회 및 시위는 제한될 것입니다.

이 단서를 아까 위원장님께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명시된 집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니 집회와 시위는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15조에 명시된 집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예 집시법에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적용배제입니다.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신고와 규제에 관한 모든 규정입니다.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시법에서 정상적인 집회와 시위는 할 수 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것도 이 법은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8조 2항에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경호안전구역 안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할 수 있다.", 법률로 이런 법률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3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 따른 집회 및 시위의 금지기간은 정상회의 기간을 포함하여 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원안에 7일이었는데 5일로 줄여서 대단한 개선입니까? 정상회의 회담, 정상회의 시간 언제입니까? 11월 11일~12일 이틀입니다. 5일을 제한해요. 도대체 어떤 근거로 국민의 기본권을 그렇게 시간적으로 제한해도 되는 것입니까?

외국 원수에 대한 폭행이나 모욕이나 협박이나 우려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형법에 이미 제107조(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 제108조(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 제109조(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 그래서 외국의 원수와 사절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 모욕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 그리고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오욕한 자는 중하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폭행, 협박, 모욕, 명예 훼손보다 훨씬 형이 중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도 이런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대체토론이, 축조심의가 더 필요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대리 김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다음에 축조심의를 이어 갈 수 있도록……

○신성범 위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훈 신성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성범 위원 일단 수정안의 내용을 보면 그동안에 여야 간에 쟁점이 되어 왔던 내용을 많이 절충했고, 존경하는 이정희 위원님이나 야당 위원들의 걱정하시는 부분을 많이 덜어낸 내용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야당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헌법 21조 집회 자유의 의의가 물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또 37조는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법에 의한 제한 규정 가능성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결국 쟁점은 이게 필요하고 합리적인가 하는 여부일 텐데,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필요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논거는 예를 들어서 경호안전구역을 지정할 때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고, 5조2항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경호안전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고, 또 테러라는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많이 상쇄시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흘이던 제한시간을 5일로 아주 많이 줄이고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문제이지 큰 원칙에 전혀 훼손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게 외국의 경우도 보면, 우리 국내에서도, 제가 이것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보니까 1988년도 서울올림픽 당시에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때는 석 달 동안 올림픽 평화구역으로 지정해서 구역 안에서는 집회 및 시위를 석 달 동안 제한했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어떠냐? 지난해에 보니까 미국 피츠버그에서 개최된 G20의 경우 시 조례에 근거해서 집회 및 시위를 일체 불허했습니다. 또 같은 해, 작년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 기간 중에는 모든 야외집회를 금지하는 법령이 선포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내용은 이렇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빨리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훈 한 번 하셨으니까, 제가 또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손범규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말씀하지 마시고……

○위원장대리 김정훈 그럼 우리 손범규……

○손범규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경호처 차장이시지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예, 맞습니다.

○손범규 위원 경호처 차장에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호안전구역이라는 것을 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사실상의, 이 법이 다른 법과 다른 것은 경호안전구역을 설정하는 문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지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예, 그렇습니다.

○손범규 위원 그러면 경호안전구역 밖은 어떻습니까? 경호안전구역 밖에서는 집회 및 시위가 보장됩니까?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예, 그것은 보장된다고 봅니다.

○손범규 위원 그런데 경호안전구역이라 하는 것은 주로 외국의 정상들, 국가원수들이 회담을 하거나 뭐 기거하거나 그런 곳 아니에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예, 정상회의장하고 숙소 그다음에 기동로,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범규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외국의 정상들이 자거나 먹거나 회의하거나 또는 주요 지점에서 주요 지점으로 이동하는 경로, 그걸 경호안전구역이라고 그러는 거지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예, 그렇습니다.

○손범규 위원 대한민국 전체가 다 경호안전구역입니까, 이렇게 되면?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아닙니다.

○손범규 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말이지요, 헌법 37조 후단에 따라서 본질적인, 국민의 기본권의 본질적인 범위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기본권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는 것을 법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예,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했었습니다.

○손범규 위원 그러면 외국의 정상들이 이동하는 그 경로에서 무슨 데모를, 집회를, 시위를 하고 싶다든가 외국의 정상들이 자는 데, 굳이 그곳 가까운 데서 뭘 하고 싶다든가, 뭐 그런 걸 막아 주는 건데 말이야, 그게 무슨 국민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한정된 기간에, 한정된 지점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번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손범규 위원 외국의 선진국에도 여러 번 G20 정상회담을 겪어 오면서 이런 식으로 다 어떤, 그 한정적인 기간 또 한정적인 지역, 지점에서는 집회 및 시위를 좀 제한해야 되겠다, 그것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도모하고 질서유지가 도모되고 전 세계의 정상들도 지켜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업무를 하는 데 가장 업무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고 지휘 통솔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따진다면 경호처장이지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통제단장으로서 전체를 총괄……

○손범규 위원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국회에서 아주 한정적이고 한시적이면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면 경호처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경호안전구역 내에서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경계 태세를 똑바로 잘 해야 됩니다.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예, 명심하겠습니다.

○손범규 위원 그리고 그 안에서 말이지, 그 한정적인 구역에서 뭐 그렇게 집회를 못 해 가지고 안달복달하느냐 말이야, 그런 사람들 있으면 잘 하세요, 테러 방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예, 명심하겠습니다.

○손범규 위원 위원장님, 이것 조속한 의결을 바랍니다. 진행을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훈 예.

○강석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훈 잠시만요. 내가 드릴 텐데, 지금 축조심사를 하는 중인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지금 축조심사 다음에 찬반토론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회법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축조심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축조심사를 마치고……

○이정희 위원 의견 있습니다.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훈 지금 얘기하시는 게 주로 찬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정희 위원 제가 지금 조문 하나하나를 놓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정훈 다음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훈 토론하실 위원님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음에 드릴 테니까 말씀하세요.

○강석호 위원 강석호 위원입니다.

G20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이런 특별법안에 대한, 제가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한 대로 일반국민들이 이렇게 그냥 볼 때는 이 부분을 엄격하게 전국적으로 통제를 하고 또 국가원수들 회의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서울에서 회의를 한다면 제주도까지 통제를 합니까?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석호 위원 그렇지 않지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예.

○강석호 위원 분명히 경호안전구역 안에서만 어떤 부분의 역할을 명시한 그런 부분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지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예, 그렇습니다.

○강석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군이 동원이 된다, 이게 무슨 계엄을 하냐, 계엄 시절도 아니고 계엄하에서 군이 동원되는 것처럼 이렇게 과장되게 또 얘기를 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는데 군이 동원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차장께서 확실하게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 이 얘기를 소상히 설명을 해 보세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군 동원에 대해서 군 동원이 아니고……

○강석호 위원 예?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군 동원 개념이 아니고 군 지원 개념입니다.

○강석호 위원 그렇지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예, 그래서 지원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번 G20 정상회의가 국가적인 초미의 대사입니다. 해서 총력 경호 차원에서, 군에서 갖고 있는 특별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화생방이라든가 또는 수중을 탐지하는 UDT 관련한 그런 부분이라든가 특수한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기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유일하게 갖고 있는 군에서 지원을 받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석호 위원 그러니까 영공 내에서라든지……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그렇습니다.

○강석호 위원 그러면 그것 답변을 좀 확실하게 하세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지 다른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 주요기관 시설 같은 것이 지금, 저희들 행사 방해 책동을 하기 위한 어떤 테러라든가 이런 게 가능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국가 차원에서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 대민 접촉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일부는 지원을 좀 받는 것이 결국 성공적인 G20 정상회의를 보장하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생각한 겁니다.

○강석호 위원 그러니까 그걸 군의 지원을 받는 것은 가능성을 열어 둔 것 아닙니까? 영공이라든지 또 근접한 부분에서 어떤 민간 경호시설에서 부족한 부분은 군의 시설 지원이라든지, 유사시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예, 그렇습니다.

○강석호 위원 그러한 결론은 물 샐 틈 없는 그러한 경호체계를 수립하는 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군의 동원이 아니고 지원을 한다, 이런 내용이지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지원을 저희들이……

○강석호 위원 최소한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 아니겠어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그렇습니다.

○강석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이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여러 가지 또 국민의 기본권을 무조건 제한한다, 그런 부분도 아니고 여러 가지 외국의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수정안에 찬성을 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 경호처 차장님!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예, 말씀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88올림픽 당시에 올림픽 평화를 지키기 위한 법률을 제정했다고 보고를 주셨는데 그다음에 또 이런 유의 법률을 제정하신 적이 있었어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그 이후는 국내에서는 없었고……

○이정희 위원 국내에서 없었지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88올림픽, 노태우 정권 때 한 것 아닙니까?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예?

○이정희 위원 노태우 대통령 때 한 것 아닙니까?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예.

○이정희 위원 노태우 대통령, 80년 광주 학살의, 군부독재의 책임자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군부독재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을 지금 20년이 지나서 민주화된 시대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에게 준 보고서에 수정안에 대해서 '여야 수석 합의안' 이렇게 쓰셨는데, 그렇게 쓰신 것 맞지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예.

○이정희 위원 경호처에서 쓰신 거지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잘못된 보고인 거지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쓴 겁니까?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일부 합의가 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정희 위원 그것을 확인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직책을 대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대통령실경호처기획실장 안종하 기획실장입니다.

○이정희 위원 기획실장께서 여야 수석 간 합의됐다고 보고를 하셨습니까?

○대통령실경호처기획실장 안종하 그것은 제가 최종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이정희 위원 이렇게 쓰게 된, 확인을 누군가 합의됐다고 하셨으니까, 보고를 하셨으니까 쓰셨을 것 아닙니까?

○대통령실경호처기획실장 안종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이정희 위원님실에 가서 입법보좌관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니, 오늘 아침에 받은, 오늘 아침 제가 30분 전에 받은 특별법 수정안에 '합의사항'이라고 써 있었다니까요.

○대통령실경호처기획실장 안종하 그 부분은 아

마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 착오는 누가 잘못 쓴 거냐고요? 이 착오는 누가 일으킨 것입니까? 책임자를 불러내서 사과를 시키십시오.

○대통령실경호처기획실장 안종하 제가 그것은 확인 못 했으니까 제가 문책……

○이정희 위원 아니, 확인을 못 하고 '수정안'이라고 쓴 거예요?

○대통령실경호처기획실장 안종하 예, 그것은 최종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을 못 하고……

○이정희 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대통령실경호처기획실장 안종하 안종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종 확인을 못 하고 이정희 위원실에 가서 아마 제출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내용은 보지를 못한 내용입니다.

○이정희 위원 사과하십시오.

○대통령실경호처기획실장 안종하 예, 그 문제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무엇을 사과하시는 겁니까? 똑똑히 이야기를 하세요.

○대통령실경호처기획실장 안종하 여야 합의했다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사실과 다르게 지금 허위의 문서를 작성해서 위원실에 주신 거지요?

○대통령실경호처기획실장 안종하 허위 문서가 아니고요……

○이정희 위원 수정안이 합의가 안 된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실경호처기획실장 안종하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입법보좌관이라든지 실무적으로 토의됐던 내용이지 그 자체가 그릇된 사실은 아니고 직원들이 잘못 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잘못 전한 직원이 누구냐고요? 그러니까 책임질 사람이 누구냐고요?

○대통령실경호처기획실장 안종하 책임은 제가, 직원 관리하는 제가 지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국회의원에게 허위로 보고한 책임을 지십시오.

○대통령실경호처기획실장 안종하 허위……

○이정희 위원 그 책임을 어떻게 물으실 겁니까?

○대통령실경호처기획실장 안종하 허위 보고는 아니고요.

○이정희 위원 허위 보고 아닙니까? '여야 수석 회의 수정안'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실경호처기획실장 안종하 직원들이 입법조사관……

○이정희 위원 들으세요.

○대통령실경호처기획실장 안종하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여야 수석 회의 수정안'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러면 국회에서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여야 수석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표현입니다.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허위 보고하신 거지요? 책임을 어떻게 물으실 겁니까, 차장님?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그 부분은 제가 해당 내용을 정확히 다시 확인해서……

○이정희 위원 아니, 보여 드려요? 와서 보세요, 그러면.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 간단한 하나가 확인이 안 돼요? 책임을 어떻게 물으실 건데요?

말씀하십시오.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저희들 규정을 확인해서 관련되는 게 잘못이 있다면 잘못한 응분에 대해서 저희 자체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훈 그것 좀 잠시 착각해서, 경호처에서 수석끼리 합의된 것으로 착각한 거지 뭐 고의적으로 그랬겠습니까?

○이정희 위원 위원장님, 제가 부처에 대해서 잘못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업무 처리의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김정훈 예, 그냥……

말씀하세요, 계속.

○이정희 위원 통합방위법에 적 침투 등 위기상황 시에만 군 병력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데 굳이 이 조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군의 병력을 배치하기 위해서 필요하셔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현재 전국적으로 국가 주요기관 시설물, 그다음에 위험물 취급소 등 약 한 4000여 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상회의를 방해하기 위한 테러가 일어날 수

있는 시설물들입니다.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 민간 경비에서 지금 현재 안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최소 인원, 장비만 예산 절감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제대로 국가 차원에서 안전활동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뭔가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현재 통합방위법에 의하면 적의 명확한 침투행위가 있을 경우에만 동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시에는 그 법을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해서 경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한 하고 만약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비노출되는 그런 부분에서 군 병력을 동원해서, 그것도 예를 들어 군복이 아닌 민간 복장이라든지 편안한 복장을 착용시켜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그런 측면입니다.

○이정희 위원 아니, 군이 직무 집행을 하는데 군복을 입지 않고 민간복장을 입는다고요, 시민을 상대로 해서 직무 집행을 하는데?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그것은 예를 들어서 경찰과 합동으로 근무를 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경찰과 치안활동에 또는 경비활동에 이루어지는 합동근무를 통해서 근무 경계력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조치입니다.

○이정희 위원 군병력이 거리에 배치되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군병력이 배치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현재 경찰력으로 예를 들어서 그 많은 국가 주요시설물들을 안전하게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니, 국가 주요시설물 4000개가 아니고 지금 회의장 때문에 그러신다면서요? 서울에서 제주까지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G20 회의 어디서 합니까?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현재 코엑스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코엑스 한 군데에서 하지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예.

○이정희 위원 우리나라 경찰 몇 명입니까?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현재 전체적으로 10만 여 명 되는데 이 G20를 위해서 동원되는 병력이 약 3만 8000여 명 됩니다. 그 인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치안활동을 하는 병력들이기 때문에 나머지 이런 주요시설에 예를 들어서……

○이정희 위원 나머지 주요시설이라니요, 어디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그러니까 수도권이라든가 직접적으로 행사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주요시설물에 충분하게 배치할 수 있는 인원이 모자랍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군을 어디다 배치한다고요? 그 주요시설물에 배치한다고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주요시설물에 일부는 지원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이정희 위원 아니, 이것 보세요.

○위원장대리 김정훈 자,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차장님, 이게 지금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이라고 들고 오신 것 아닙니까?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G20 정상회의 회담이 열리는 곳, 경호안전구역은 정상회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장소, ‘정상들의 숙소’ ‘관련된 도로’ ‘그 장소의 주변’ 이렇게 써 놓으셨네요. 이것도 굉장히 넓은데 코엑스 바로 근처 말고는 경호안전구역으로 지정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들고 오신 법에 따라서도. 그러면 다른 4000개 중요시설물을 경호안전구역으로 어떻게 지정을 합니까? 못 하지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그것은 통제단장인 경호처장이 예를 들어서 그런 행사장, 그러니까 코엑스면 코엑스, 정상회의장 또는 숙소 이런 지역의 안전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이정희 위원 뭡니까?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그런 시설은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라든가 급수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전력이라든가 또 가스라든가 이런 부분은 원거리에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원거리에서 안전활동에 문제가 생기면 행사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설물들은 해당 기관장에게 요청도 하고 그런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포함시키는 겁니다.

○이정희 위원 아니……

○위원장대리 김정훈 이정희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토론이 있기 때문에 죽 하시고 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질의가 덜 끝났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훈 지금 다른 위원님들 기다

리니까.

○이정희 위원 제가 이 꼭지는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 꼭지는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훈 마무리 빨리 해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 지하철이나 수도나 가스를, 이것을 왜 군이 나가서 지켜야 됩니까? 예? 지하철공사에도 안전직원들이 있고 경찰이 파견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그 부분이 지금 그렇게 명확하게 제가 몇 명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경호환경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해당 기관의 자체적인 안전요원 현황 그 다음에 경찰의 지원 능력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가변성이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은 그런 총력경호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에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주로 군을 배치해서 안전활동을 하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정희 위원 이것 보십시오.

지금 제9조에 '경호안전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국가중요시설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의 배치 및 장비를 운용할 수 있다' '통제단장이 경찰청장 등 경호안전 관련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중요시설이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위원장대리 김정훈 이정희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하십시오.

그러면 신지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호 위원 과거 우리 대한민국이 권위주의 시대의 아픔도 겪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미 민주화가 된 지 오래됐고 따라서 80년 광주 운운하면서 이 법이 과거의 그러한 권위주의로 돌아가려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것은 한마디로 시대착오적 진단이자 주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얘기까지는 굳이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적 충격과 슬픔에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군을 불신하는 이러한 언동은 자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군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아껴야 될 국회의원이 군을 기본적으로 불신하는 이러한 뉘앙스의 발언은 좀 자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희 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신지호 위원 발언 안 끝났어요. 발언 중에는 좀……

○위원장대리 김정훈 아직 5분 시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정희 위원 지금 다른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신지호 위원 기본적인 국회의원으로서의 회의 진행에 대한 ABC를 갖춰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어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헌법재판소에서 야간 옥외집회를 일몰 후 일출 전 이렇게까지 금지해 놓은 게 과도하게 금지했다 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는데 6월 30일 날까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의 비협조로 인해서 지금 법 개정이 안 되었고 6월 국회는 개회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서 입법 공백이 현재로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입법 공백이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국회의 기본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고 일부 야당에서는 사실상 집시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과거 우리가…… 재작년 광우병, 서울 도심을 100일 이상 마비시켰던 광우병 시위에 불법 폭력의 아수라장을 재현시키고자 의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적어도 건국 이래 최대의 외교행사라고 할 수 있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한시적이나마 이런 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당한 의견을 수렴하셔서 이 법을 처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건의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배은희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배은희 위원 G20 회의가 국제회의지요? 국가의 모든 정상들이 오는 회의지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예, 그렇습니다.

○배은희 위원 그래서 이 국제회의를 지금 어떻게 잘 경호할 건가 고민하는 차원에서 나온 법률 맞지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예, 그렇습니다.

○배은희 위원 그래서 이정희 위원님이 토론을

많이 해 주시는 그 진심은 국가를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을 위하고.

그런데 G20 회의가 될 때, 어떻습니까? 경호차장님 보시기에 거기 서울에서 외국인이 더 많을 것 같으세요, 대한민국 국민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이 행사장 주변에?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정확한 자료를 제시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은 40여 개국 이상의 국빈들이……

○배은희 위원 한 나라에서 보통 이삼백 명씩 수행원들 오지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예, 1만 5000여 명의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은희 위원 그러면 경호 대상을 내국인보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불순세력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 대한 것을 고민하고 지금 이것 진행하시는 것 맞지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예, 그렇습니다.

○배은희 위원 그러면 그것을 고려해서 현재 법으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데를 제한을 못 하기 때문에 이 특별법에 들어간 조항 같은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지금은 다자간 정상회의 시 벌어지는 시위 양상 자체가 과거 런던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양상으로 볼 때 반세계화를 외치는 이런 원정 시위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는 한 3만 4000명의 시위대 중에 약 2만여 명이 사실은 외국에서 온 원정 시위대였습니다.

그렇듯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정상회의 때도 외부에서 오는 원정 시위대가 대다수 차지해서 폭력적이고 과격한 그런 시위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론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정당한 합법적인 합리적인 집회나 시위가 다소 제한이 될 가능성 때문에 논란이 되는데 사실은 이런 원정 시위대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집시법을 이렇게 제한적으로 좀 제한한다라는 규정이 들어간 겁니다.

○배은희 위원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커다란 국제회의를 대비하고 이 국제회의의 성공적인 개최가 우리의 국익에 정말 너무나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많은 외국인이 왔을 때 질서유지라든지 외국인을 대상으로 어떤 경호 업무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시적인 특별법을, 수정안까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 찬성해서 그리고 그때 필요한 법은 앞으로 국회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결의를 하고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찬반토론인데요, 마지막으로 이정희 위원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토론의 횟수를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정훈 그것은 위원장이, 토론을 종결하고 안 하고는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이정희 위원 토론은 계속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정훈 그것은 국회의 본회의도 토론을 종결하고 안 하고는 국회의장 권한이듯이 운영위원회 회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신지호 위원님께서 '군을 불신하는 태도와 언동은 자제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이 그런 언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군을 불신하는 언동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헌법에서 군은 국가의 국토방위를 위해서 활동하라고 되어 있고 그것이 군의 임무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헌법의 틀 내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군이 그것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은 분명한, 우리 역사에서 보아온 것입니다.

다른 위원의 말을 왜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간사, 안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행정안전위원회 말씀을 하셔서 지금 이 사안과 관련 없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국회가 집시법 개정을 하지 않아서 지금 입법의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6월 30일까지 집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집시법의 위헌 판결을 받은 조항은, 위헌 결정을 받은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입법의 공백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효력을 그냥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왜곡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경호처 차장님!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예, 말씀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9조의 '국가 중요시설'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국가 주요시설이라는 것은……

○이정희 위원 어느 법에 이것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까?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예를 들어서 그것은 국정원법에 규정되어 있고 국방부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국가 주요 기반시설로서 보호가 필요한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등급을 나누고 거기에 따른 평상시 안전활동을 실시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돼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것은 어느 법에 규정이 있습니까?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불특정 다수 시설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하철이라든가……

○이정희 위원 아니, 어느 법에 규정이 있느냐고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그것은 법의 규정보다는 일반시민이 다수 이용을 해서 만약 어떤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수의 인명이라든가 이런 살상이 나서 사회적으로 혼란이 오거나 하는 그런 시설물들을 저희들이 정의하는 겁니다.

○이정희 위원 지하철 입구를 아예 나오지도 못하게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지금 이 법에 따르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그렇게 완전 차단해서 막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정희 위원 이미 그렇게 해 오셨잖아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그게 현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어떤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라든가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안전 활동을 통해서 찾아내고 제거하는 그런 활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군이 지하철에도 배치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군병력이 지하철에도 배치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민이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산악이라든가 또는……

○委員長 安商守 가만있어 봐.

이정희 위원님, 이것 지금 찬반토론 시간 아닙니까?

○이정희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축조토론의 축조심의를…… 이전에 질의를 하고자 했는데 '축조심의 가서 하십시오' 하고 질의를 끝내셨습니다, 지금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께서. 그다음에 축조심의를 하고 있는데,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그다음에 '찬반토론 가서 하십시오' 하고 또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꼭 여쭈어 봐야 되겠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얼마나 더 물어봐야 됩니까?

○이정희 위원 아직 많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아니, 시간은…… 규칙을 지켜야지요, 회의는.

찬반토론을 몇 분씩 하기로 했습니까?

○김정훈 위원 5분입니다.

○委員長 安商守 그러면 5분이 지금 넘었지 않습니까?

○이정희 위원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까?

○委員長 安商守 아니, 그것은 위원장이 판단할 거니까…… 지금 몇 분 정도 더 찬반토론하실 예정입니까?

○이정희 위원 2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2시간?

○이정희 위원 예.

○委員長 安商守 여하튼 5분 내에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호 위원 이미 5분을 했는데요, 뭘……

○이정희 위원 신지호 위원님, 예의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접촉하는 곳에는 군을 배치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규정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이정희 위원 아니, 이 법률의 어디에 들어가 있냐고요, 이 법률의?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그 법률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운영하는 운영권자가…… 그것은 양심을 믿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정희 위원 양심을 믿어요?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예, 그렇지요.

○이정희 위원 (웃음)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그러면 거기에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근무 위치까지 표시를 해서, 활동까지 예를 들어서 규정하는 것은 저는 법 조항에 맞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정희 위원 군이 기본적으로 군인이 아닌 군무원이 아닌 일반 민간인과 접촉하는 데서 공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허용되는 것은 계엄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극히 한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경우에 경찰력이 좀 모자란다고 해서, 그리고 중요한 회의라고 해서, 시위가 나면 시끄럽기 때문에, 사람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하철 타고 멀리서 올 수도 있으니까, 가스를 저쪽에서 폭파시키면 이쪽으로 불이 옮겨 올 수 있어서, 이런 명백하고 현존하지도 않는 위험을 가지고, 특정될 수도 없는 문제를 가지고 군을 배치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드는 것 자체가 허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희가 양심을 믿어도 그런 법 조항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양심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 안에서 정부안을 제출할 때, 명의로는 의원 입법으로 내셨지만 정부안이라는 것을 지금 시인하셨습니다.

정부안을 제출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

○이정희 위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사전에 관련 부서와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위헌 소지가 없는지 이런 것은 다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은 사전에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법제처 심의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그쪽에도 저희들이 일부 실무자들한테는 의견을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어떤 의견을요?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는 않으셨을 테고.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예, 서류로서 공식적인 절차는 밟지 않았지만……

○이정희 위원 전화하셨습니까?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충분한 자문은 받았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만나서 들으셨다는 겁니까?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만나서 들으셨다?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예.

○이정희 위원 법제처의 어느 조사관, 어느 심의관과 만나셨습니까?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아니……

○이정희 위원 지금 보고를 하십시오, 지금. 말씀을 하십시오.

담당자가 나와서 말씀을 하세요. 법제처의 누구와……

○대통령실경호처기획실장 안종하 기획실장입니다.

법제처에서 저희들 지원 나와 있는 우리 법제관이 있습니다. 같이 토의해서 만든 것이지,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자문을 받은 게 아니고……

보충답변을 드려도 가능하면 저희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법제관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대통령실경호처기획실장 안종하 성함은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은 필요하면 의원실 찾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직위가 어떻게 되십니까? 어느 실에 배치되어 있는 어느……

○대통령실경호처기획실장 안종하 법무비서관실에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법무비서관실에?

○대통령실경호처기획실장 안종하 예.

○이정희 위원 그러면 소속이…… 법제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요?

○대통령실경호처기획실장 안종하 예, 정부 입법일 때.

○이정희 위원 원래 정부 입법을 낼 때는 법제처 심의를 받는 거지요?

법제처에서 파견 나온 법무비서관실에……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그것은 의견을 들은 겁니다.

○이정희 위원 법제처에서 파견 나온 법무비서관실에 소속된 대통령실 직원에게 의견을 들으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공식적으로 정부 입법이라는 것은 국민에게 갖춰야 될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도 안 됐습니다. 입법예고 당연히 안 됐지요. 국무회의 심사 당연히 안 됐지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절차가 하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 입법으로 내면 다 끝인 겁니까?

○委員長 安商守 자, 이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아직 질의가 좀 남았습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경호안전통제단을 둔다고 하셨는데요,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통제단 단장은 경호처장이시고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실경호처차장 최찬묵 현재 예하에 저희들이 경호 관련된 작전본부 그다음에 경찰, 국정원, 국방부, 소방방재청이 필요한 부서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委員長 安商守 그러면 시간이 끝났으니까 신지호 위원 발언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질의가 남았습니다, 위원장님.

○신지호 위원 사실관계에 왜곡이 있었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간단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작년 9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야간 옥외 집회에 대해서 위헌결정이 아니라 헌법불합치결정입니다. 사실관계에 착오나 왜곡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주문을 읽어보면 알지만 올해 6월 30일까지 국회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委員長 安商守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위원장님, 신지호 위원께서 저에 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委員長 安商守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4항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에 대하여 제출된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에 붙이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러면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된 안건에 대한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 위원(19인)

강석호	김동성	김재윤	김정훈
노철래	류근찬	박보환	배은희
성윤환	손범규	신성범	신지호
안상수	우윤근	우제창	원희목
이정희	이학재	장제원	

○청가 위원(2인)

김영록 안효대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성곤

○국회측 참석자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박계동
사무차장	임인규
기획조정실장	류환민
법제실장	김성원
의사국장	이종후
관리국장	한공식
국회도서관	
관장직무대리	허영호
기획관리관	고인철
의회정보심의관	홍정순
국회기록보존소장	우학명
국회예산정책처	
처장	신해룡
예산분석실장	김호성
경제분석실장	박종규
사업평가국장	박용주
기획관리관	빈성림
예산분석심의관	박인화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심지연
정치행정조사실장	이상철
경제산업조사실장	류재우
사회문화조사실장	이인용
기획관리관	김요환

정치행정조사심의관 배 용 근

○정부측 참석자

대통령실경호처

차 장 최 찬 묵

기 획 실 장 안 종 하